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 사유 추가〉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68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6268)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 사유 추가(안 제19조의2)	2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221626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 수준이 동일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1항).

Ⅲ. 검토의견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 사유 추가(안 제19조의2)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제한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 -----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u>제9조까지</u> ,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라. ----- ----- ----- <u>제11조까지</u> ----- -----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¹⁾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종사가 될 수 없음.²⁾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043호, 2025.1.17. 시행)

2) [참고] 현행법에 따른 종사제한대상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 현행법의 종사 제한에 해당하는 범죄와 형량수준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종사제한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에 따른 종사제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종사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사제한 제도 취지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³⁾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격 취득제한 사유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 1.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2. 2., 2021. 7.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개정안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의 범위가 유사 사업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업별 종사제한 사유 비교 】

	택배서비스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비고
근거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 전법」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 (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2022.1.28.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2025.1.17. 시행	
개정 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제10조(업무 상 위력 등에 의 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에서의 추행)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에서 만 제한하게 됨

특히 개정안과 같이 종사제한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배달 등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범위는 택배서비스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보다 확대되는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 역시 불특정 다수의 승객과 대면하여 접촉이 잦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유사 업종 간 규제 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종사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서 성범죄자·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종사 자격 제한이 배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복귀를 저해하여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논의된 바 있음.⁵⁾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사유를 추가할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면 해당 종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계약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⁶⁾

5) 제405회 국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 2023.4.18.

6) 부 칙 <법률 제20043호, 2024.1.16.>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경력
자 종사제한에 관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가사근로자⁷⁾, 아이돌봄사⁸⁾, 장애인관련기관 종사자⁹⁾ 등 아동·장애

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
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
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봄사가 될 수 없다.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
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
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
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
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
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를 종사제한 사유로 두고 있어 동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¹⁰⁾ 특히 현행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¹¹⁾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¹²⁾를 포함하는 등 종사제한 사유를 비교적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¹³⁾, 환경교육사¹⁴⁾는 개정안과 같이 「성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를 종사 제한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대면서비스 위주의 배달업 특성을 감안할 때 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전력자의 경우에도 종사를 제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1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환경교육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참고

현행법에 따른 종사제한 대상

징역형의 형량	조 문	종사제한 기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	20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3항	20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1항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1항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2항	20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1항 제4조(특수강간 등)제1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1항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제2항	20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1항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2항	20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4조(특수강간 등)제2항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2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2항, 제5항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3항	2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3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3항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3항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2항	20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6항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항	20년
7년 이하의 징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항, 제2항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항, 제2항	20년
5년 이하의 징역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2항	없음
3년 이하의 징역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항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없음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4항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4항	20년
2년 이하의 징역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없음
1년 이하의 징역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